

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
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(면접대상자) 명단

* 응시(접수)번호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

응시번호 (접수번호)	성명	응시번호 (접수번호)	성명
02	채○비	03	이○진
04	최○혜	05	이○희
15	송○찬	16	정○진

2. 면접심사 일정

(1) 면접일시: 2026. 8. 25.(화) 14:00~

(2) 면접장소: 정부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

※ 면접대기장소: 정부지방합동청사 2층 회의실(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)

(3) 유의사항: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연락드리는 면접일시에 '신분증'을 지참하여 위 면접대기장소로 도착완료

※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(별도 시험 없음)

※ (신분증)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에 한하여 인정

3.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* 허위기재 또는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

(1) 제출기한 및 방법

- 제출기한: 2026. 8. 21.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: 청년인재 DB내 '청년인턴 채용' 공고에 신청

(2) 제출 서류

※ 입사지원서에 기타 우대요건 대상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서류합격 후 제출기한 내 아래 서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

- 정책제안서 1부(서식 1, 필수 제출)
-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(서식 2, 필수 제출)
- 기타 우대요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대상자	정의	증빙서류
취업지원 대상자	○ 아래의 법률에 따른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	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
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수급자증명서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자립준비청년	「아동복지법」제3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	보호종료확인서 (퇴소사실증명서)

4. 최종합격자 발표

- 2026. 8. 27. (목) 강원지청 홈페이지,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 공고 및 개별통보

※ 합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

5. 기타 유의사항

- (1)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(2)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(3)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(4)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(5)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(6)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·조사,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(7)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 의사가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(8) 면접 관련 문의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고용관리과 (033-269-3564)

※ 심사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.

<서식 1: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>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	성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	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-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 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 -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 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귀하

<서식 3: 필요 시 제출>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